

# 학위 논문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대학원 학위수여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의 작성, 지도, 제출,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논문연구계획서 / 논문지도교수 등

**제2조(학위논문 연구계획서)**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소정기간 내에 ‘학위논문 연구계획서’를 본교 대학원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지도교수 자격)**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원을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논문지도교수 배정절차)** ① 석사 2학기차, 박사 3학기차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희망 지도교수에게 확인을 받아 학과에 ‘학위논문지도교수 신청서’ 제출 후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.

② 삭제

③ 학과에서 추천된 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인준함으로써 확정한다.

④ 삭제(개정 2023.1.1.)

**제5조(지도학생 수 제한)** ①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 1인이 담당할 학생 수는 한 학기당 5명 이내로 한다.(단, 누적된 학생은 제외한다)

②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학과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㉠ 논문제목(내용)과 지도교수의 전공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

㉡ 특정교수에게 지도교수 신청이 편중된 경우

㉢ 기타 논문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

③ 전공교수의 사정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지도학생 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6조(논문지도 카드) 삭제**

**제7조(논문지도비)** ① 논문지도가 종료되면 논문지도교수에게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지급한다.

② 논문지도비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여 학교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지도비는 교비에서 지출한다.

**제8조(논문작성법)** ① 논문의 작성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.(개정 2023.1.1.)

**제9조(논문지도교수의 변경)** 지도교수의 신상변화(휴직, 안식년 등)로 인하여 논문지도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학생에게 알려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과장을 경유, ‘논문 지도교수 변경신청서’를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원장, 일반대학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논문 지도기간의 연장)** 삭제

**제11조(연구윤리준수)**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‘연구윤리 서약서’ 및 ‘연구윤리 교육이수증’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23.1.1.)

②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 11장 및 ‘연구윤리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다.(신설 2023.1.1.)

**제12조(논문지도 및 논문작성법)** ① 논문지도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.(신설 2023.1.1.)

② 수준 높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논문작성 및 지도와 관련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작성의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.(신설 2023.1.1.)

### 제3장 논문의 제출

**제11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**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①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,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정규 등록을 필한 자

②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

③ 취득학점 평균 평점이 3.0(B<sup>+</sup>)이상인 자

④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을 받고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자(단,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.)(개정 2023.1.1.)

⑤ 재학연한 이내인 자

⑥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
**제12조(논문공개발표회)** ①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자는 학위논문 공개발표회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논문공개 발표회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실시하되 지도교수 참관아래 관련 전공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행하여야 한다.

③ 논문공개발표회는 학위논문 원고제출 이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3조(심사용 논문 제출)** ① 학위논문의 지도가 완료되면 심사용 논문원고를 소정 기간 내에 석사학위과정은 3권, 박사학위과정은 5권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삭제

- 제14조(논문심사비)** ① 학위논문 원고 제출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 
② 논문심사비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여 학위논문 원고 제출시에 안내문으로 공지한다.  
③ 논문심사비는 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비와 진행비 등의 경비로 지출한다.  
④ 논문심사비 지급은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.  
⑤ 납부된 논문심사비는 논문이 통과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 
⑥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된 경우에는 차후의 논문심사학기에 다시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학위논문 제출승인서) 삭제**

**제16조(학위논문 제출기한)** 학위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학기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수료자의 학위논문 제출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며 제출기한을 정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23.1.1.)

**제17조(논문 연구등록) 삭제**

**제18조(논문 수강신청) 삭제**

## 제4장 논문의 심사 등

- 제19조(논문 심사위원의 구성)** ①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,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한다. 단,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중 2인은 외부인사로 한다.  
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교 교원 및 겸임교수 중에서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원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, 박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외부 심사위원은 반드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 
③ 삭제

**제20조(심사위원장)**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. 다만, 해당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- 제21조(논문의 심사시기, 절차, 진행)** ① 논문의 심사 시기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심사하되 예비심사는 4월과 10월에, 학위청구논문발표는 6월 초순과 12월 초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23.1.1.)  
② 심사용 논문원고는 논문심사일 1주전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권, 박사학위과정은 5권을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3.1.1.)  
③ 논문심사는 논문의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  
④ 논문심사는 본인을 출석시켜 공개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그럴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.

**제22조(논문심사의 방법, 판정)** ① 논문의 심사는 논문내용과 체제상의 결함이 없는가를 살핀 후 합격(Pass) 또는 불합격(Fail)으로 판정한다.

② 합격의 판정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상 80점(B<sup>+</sup>)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.

**제23조(심사결과 보고)** 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지도교수가 각 심사위원의 석사학위청구논문 발표결과 및 심사요지보고서와 논문지도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거, 작성하여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심사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논문통과)** 논문심사에 통과된 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25조(재심사)** ① 논문심사에서 1차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그 일정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재심사의 일정은 최종 논문제출일보다 20일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불합격 논문)**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적절히 보완하여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논문의 제본/ 학위취소 등

**제27조(논문의 제본 및 납본 등)** ① 학위논문이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부수를 논문규정에 따라 제본하여야 한다.

② 제출하는 논문 석사과정은 4권, 박사과정은 6권 전권을 심사위원 전원의 자필서명을 받고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2023.1.1.)

1.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
2. 저작물이용허락동의서
3. USB 또는 CD(논문파일)

③ 제본된 논문은 그 내용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소정의 부수를 학교에 납본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학위취소 등)** 다음의 경우에는 학위수여 후에라도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학생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2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등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증명서 발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## 부 칙

- 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④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